

수 원 지 방 법 원

제 2 민 사 부

관 결

사 건	2010나10808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문○○ (63년생, 남) 성남시
피고, 항소인	◇◇◇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이○○, 강○○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2. 11. 선고 2009가소53904 판결
변 론 종 결	2010. 8. 20.
판 결 선 고	2010. 10. 29.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9,699,670원 및 이에 대한 2009.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10, 11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성남시 상가 지하 1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슈퍼'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중, 2007. 7. 6. ◇◇◇주식회사(이하 '◇◇화재'라 한다.)와 사이에 위 점포에 관하여 보험기간 2007. 7. 6. 16:00부터 2010. 7. 6. 16:00까지, 보험가입금액 사실 40,000,000원, 동산 100,000,000원, 건물 60,000,000원으로 하는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비즈안심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1. 20.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화재'라 한다.)와 사이에 위 점포에 관하여 보험기간 2007. 11. 20.부터 2012. 11. 20.까지, 보험가입금액

시설 50,000,000원, 집기·비품 10,000,000원, 동산 100,000,000원으로 하는 무배당 ●
●올라이프뉴비즈니스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2007. 12. 18. 02:12경 이 사건 점포 내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여 보험목적물인 시설, 동산, 건물 등이 소훼되었다.

라. 1) 손해사정업자인 피고는 ◇◇화재의 손해사정 의뢰를 받고 2007. 12. 21. 화재의 원인이 신원미상자의 현금절취 후 방화로 추정되며 차후 이에 대한 추가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등의 내용으로 작성한 현장조사보고서를 ◇◇화재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는 2009. 1. 31.경 위 점포의 후문 시건 여부, 위 점포의 급격한 매출감소상태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한 점, 원고가 상당한 채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한 점, 원고가 화재사고를 알고난 후 고의로 화재현장에 늦게 나타난 점, 발화장소 등에서 원고가 사용하는 담배꽂초가 발견된 점, 추가보험 가입 사실을 숨긴 점, 원고가 보유자산에 대해 허위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방화 가능성을 의심하는 한편 제3자의 방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등의 내용으로 작성한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였다.

3) 피고는 2009. 1. 2. 화재사고 원인에 관하여 중간보고서의 의견을 유지한 손해사정서를 ◇◇화재에게 제출하였는데, 원고의 방화 가능성의 근거가 되는 사항에서 원고가 보유자산에 대해 허위진술한 점은 제외되어 있다.

마. 1) ◇◇화재는 2008. 4. 30.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41418호로서 위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는 이에 대한 반소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00607호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화재보험금 청구소송

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9. 2. 5.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화재에 대하여 원고에게 보험금 43,190,86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며, 나머지 반소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위 판결에 대하여 ◇◇화재가 서울고등법원 2009나31712(본소), 2009나31729(반소)호로 항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2009. 8. 27.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위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보험금지급채무는 39,892,492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화재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나머지 본소 및 반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는 허위의 사실로 근거 없이 원고가 방화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손해사정행위 등을 하여 손해사정을 의뢰한 ◇◇화재가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보험금지급채무를 부인하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게 하였는바, 그로 말미암아 원고는 소손된 상품의 창고 보관 사용료로 지출한 1,623,600원, 상품의 재고 및 손해수량 파악을 위한 조사비용으로 지출한 1,000,000원 합계 2,623,600원, 보험금 39,892,492원에 대한 2008. 1. 18.부터 2009. 2. 5.까지 약관대출이율 연 7.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위 소송의 변호사 승소사례금 6,6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피고는 주위적으로는 위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 합계 19,699,670원을, 예비적으로는 위자료 18,0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11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중간보고서 중 '원고가 보유자산에 대해 허위진술한 점'에 관한 항목 부분에서 원고가 그 진술과 달리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고, 원고가 문○○이 직장가입자인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서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고 조사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반면 이 사건 점포의 사업자등록이 원고 명의로 되어 있고, 원고가 90라○○호 소형 화물차의 소유자이며, 세대주로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종합하면, 이 사건 점포의 출입구는 정문과 후문 두 곳뿐이고, 지하이기 때문에 창문을 통해서도 슈퍼 내부로 들어올 수 없는 구조인 사실, 위 화재사고 당시 정문은 셔터가 내려진 상태였으며, 후문 출입구는 파손되지 않은 채 개방되어 있었던 사실, 위 점포의 정문 열쇠는 원고와 원고의 동생 ◇◇용이, 후문 열쇠는 원고만이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가 위 점포를 개업한 직후인 2007. 7.의 월 매출액은 69,696,750원이었지만, 이 사건 화재사고 직전인 2007. 12.의 월 매출액은 22,362,000원에 불과하였던 사실, 원고가 이미 ◇◇화재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이를 ◇◇화재나 ♡♡화재에 고지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목적물에 관하여 ♡♡화재와 추가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화재사고는 그로부터 한 달도 채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이 사건 화재사고가 내부자의 방화로 발생하였다고 의심할 정황이 다수 존재하기도 하였으며, 피고도 이러한 사유를 원고의 방화 가능성을 의심할 근거로 삼은 점 및 피고가 ◇◇화재에 최종적으로 제출한 손해사정서에서 원고가 보유자산에 대해 허위진술한

점의 항목은 제외되었고, 피고가 현장보고서, 중간보고서 및 손해사정서에서 원고측이 아닌 제3자에 의한 방화 가능성을 계속 지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중간보고서에 일부 사실과 다른 조사 내용이 있다는 점이나 갑 제6호증의 4,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사정을 하는 등으로 근거 없이 원고의 방화 가능성을 의심하는 부실한 손해사정업무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화재사고로 인한 손해이나 화재보험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참고 사용 보관료, 조사비용이 피고의 손해사정행위 등과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할 수 없다.

원고와 ◇◇화재 사이의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범위를 초과한 지연손해금이나 원고가 위 소송을 수행하고 지출한 승소사례금 상당의 변호사비용(원고는 ◇◇화재와 사이의 소송비용확정절차를 거쳐 확정된 소송비용액 2,405,0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손해배상으로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이 피고의 행위와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피고의 손해사정행위 등으로 인하여 재산상 배상을 받는 것만으로 위자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위와 같은 점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규현 _____

 판사 김영기 _____

 판사 김효연 _____